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2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22 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 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22 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2 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2023. 1. 31]

주요내용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23.1.31.)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해 왔습니다.
- 2022 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 사로 전년(33,250 사) 대비 4,269 사(12.8%) 증가하였습니다.
  - 2022 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 년간 평균증가율(5.5%)의 2 배 수준인 12.8% 증가하였습니다.
  - \* ['19 년] 32,434 사 → ['20 년] 31,744 사(↓ 2.1%) → ['21 년] 33,250 사(↑ 4.7%) → ['22 년] 37,519 사(↑ 12.8%)
- 2022 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 사로 전년(1,969 사) 대비 7 사(0.4%) 증가하였습니다.
  - 주기적지정이 677 사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 460 사, 재무기준\* 미달 346 사, 관리종목 130 사 등의 順입니다.
  - \* 3 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지정회사수는 新외감법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2022 년은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이 증가한 반면, 상장예정법인 감소 등이 상쇄되어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 \* ['19 년] 1,224 사(75.1%) → ['20 년] 1,521 사(24.3%) → ['21 년] 1,969 사(29.5%) → ['22 년] 1,976 사(0.4%)

I. 2022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2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 (12.8%) 증가하였음

□(제도개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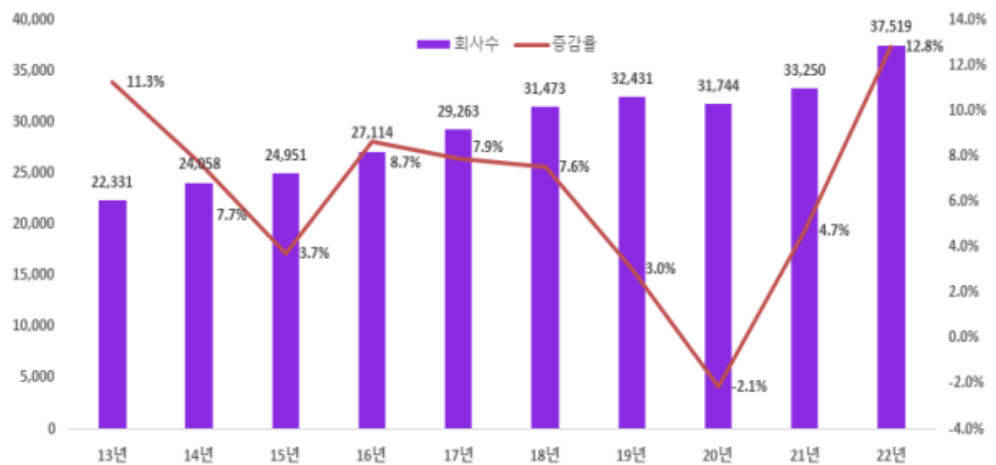
□(외감대상 현황) 2022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대비 4,269사(12.8%) 증가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후 2021년부터 지속 상승

\* 자산 120억 이상 등 (①자산 120억원 ↑, ②부채 70억원 ↑, ③매출액 100억원 ↑, ④종업원 100명 ↑, ⑤사원 50명 ↑(유한회사 限)), 일부 SPC 등 외부감사 제외

-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사로 전년 대비 8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4,977사로 전년 대비 4,184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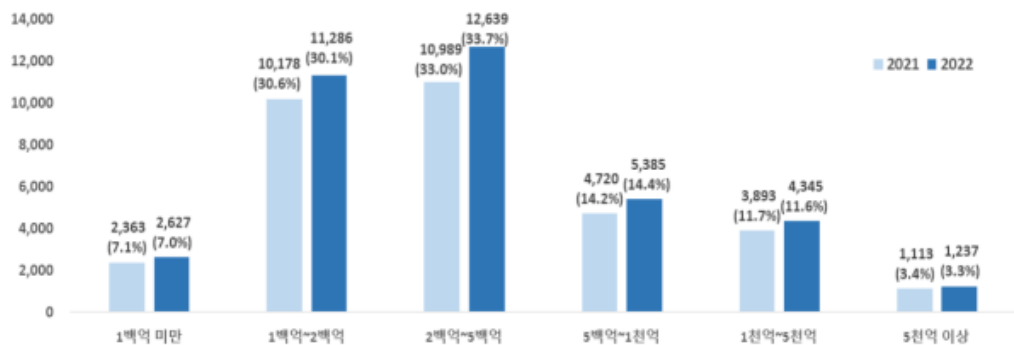
###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2.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1	815	1,511	131	2,457	30,315	32,772	478	33,250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증감 (비율)	4 (0.5)	80 (5.3)	1 (0.8)	85 (3.5)	4,096 (13.5)	4,181 (12.8)	88 (18.4)	4,269 (12.8)

◦ 자산총액별로는 200 ~ 500억원 12,639사(33.7%), 100 ~ 200억원 11,286사(30.1%), 500 ~ 1,000억원 5,385사(14.4%) 순

###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6,398사(97%), 3월 결산법인 479사(1.3%), 6월 결산법인 284사(0.8%) 순

###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2.12월말 현재)

구분 \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상장법인	-	1	18	-	-	15	1	1	9	-	5	2,492	2,542
비상장법인	18	17	461	15	20	269	12	22	157	52	28	33,906	34,977
합계 (비율)	18 (0.05)	18 (0.05)	479 (1.3)	15 (0.04)	20 (0.05)	284 (0.8)	13 (0.04)	23 (0.06)	166 (0.4)	52 (0.1)	33 (0.09)	36,398 (97.0)	37,519 (100.0)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6,096사(69.6%)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4,152사(11.1%)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7,271사(19.4%)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비율)	
계속선임	1,543	24,553	26,096	69.6
변경선임	941	3,211	4,152	11.1
신규선임	58	7,213	7,271	19.4
총 계	2,542	34,977	37,519	100.0

II. 2022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022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 증가(0.4%)하였으며, 주기적지정 677사, 상장예정법인 460사 順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현황) 2022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대비 7사 증가(0.4%)

◦지정회사수는 新외감법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은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이 증가한 반면, 상장예정법인 감소,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

\* [‘19년] 1,224사(75.1%) → [‘20년] 1,521사(24.3%) → [‘21년] 1,969사(29.5%) → [‘22년] 1,976사(0.4%)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3%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5.3%,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4%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구분	2021		2022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주)	1,969	1,256	1,976	1,152
외부감사 대상회사(B)	33,250	2,457	37,519	2,542
지정비율(A/B)	5.9%	51.1%	5.3%	45.3%

주)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22년에 2023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22년 지정회사 수에 포함

최근 10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회사·유형별 지정 현황

구분	2021				2022				증감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		소계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		소계	상장 법인	총계
		대형	기타			대형	기타			
주기적 지정	593	77	4	674	531	144	2	677	△62	3
직권 지정	663	143	489	1,295	621	171	507	1,299	△42	4
합 계	1,256	220	493	1,969	1,152	315	509	1,976	△104	7

◦(주기적 지정) 상장 531사(유가 219사, 코스닥 312사), 비상장 146사 등 677사를 지정하여 전년(674사)대비 3사(0.4%) 증가

- 2022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31사)는 계속지정 359사\*와 신규지정 172사이며,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계속지정 80사와 신규지정 66사임

\* '21년 주기적 지정된 593사 중 234사(●주기적지정 3년이 종료된 192사, ●'22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38사, ●외감제외 등 지정해제 4사 등)가 감소

◦(직권 지정) 상장 621사(유가 169사, 코스닥 390사, 코넥스 62사), 비상장 678사 등 총 1,299사를 직권 지정하여 전년(1,295사)대비 4사(0.3%)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460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346사, 관리종목 130사, 감사인 미선임 121사 등의 順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지정사유 <sup>주)</sup>	지정연도	2021	2022	증감	증감률
주기적지정		674	677	3	0.4
상장예정법인		481	460	△21	△4.4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266	346	80	30.1
관리종목		164	130	△34	△20.7
감사인 미선임		89	121	32	36.0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88	52	△36	△40.9
부채비율 과다		53	2	△51	△96.2
감리조치		42	40	△2	△4.8
회사요청		38	36	△2	△5.3
선임절차 위반		39	71	32	82.1
횡령·배임 발생		19	17	△2	△10.5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2	8	6	300.0
기타		14	16	2	14.3
소계		1,295	1,299	4	0.3
합 계		1,969	1,976	7	0.4

주)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 지정사유로 분류

< 전년대비 증감요인 >

□전년대비 증가

- (재무기준 미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가 증가
- (감사인 미선임) 외부감사 대상 증가와 감사계약 체결기한 내 미체결 회사가 증가
- (선임절차 위반) 감선위 점검대상의 증가와 선임절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년대비 감소

- (관리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지정기간(3~4년) 종료와 재무기준 미달 등 신규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대표 지정사유의 변경
-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지정사유 시행 이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된 회사가 감소
- (부채비율 과다) '22 사업연도부터 부채비율 지정 사유가 폐지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976사에 대하여 총 66개 회계법인('21년 92개 회계법인)을 지정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5사(43.3%)로 전년(716사, 36.4%) 대비 139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6.9%p 증가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지정군	2021	2022	증감	증감률
가군 (Big4)	716	855	139	19.4
그외	1,253	1,121	△132	△10.5
전체	1,969	1,976	7	0.4

**[참고]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 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주기적 지정(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2월 21일 일부 수정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 (당초안)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수정안) 2년 → 8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 운용재산 범위에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외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추가

□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 해외자회사 요건(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관련,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 추가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①)

\* 해외손회사 요건을 1)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 10% 이상, 배당확정일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2)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 10%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범위에 추가하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2023년 2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의2)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1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li> <li>(확대: 5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5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li> </ul>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하여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li> <li>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li> <li>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li> <li>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li> <li>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li> <li>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li> </ul> </li> </ul>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 2개)</li> <li>-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 (디스플레이 추가)</li> <li>-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 (선박 추가)</li> </ul>
에너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1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li> <li>▪ (확대: 2개)</li> <li>-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li> <li>-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페타이어, 폐섬유 추가)</li> </ul>
융복합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li> </ul>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현행) 연 1.2% → (개정안) 연 2.9%

※ 적용시기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사항**

○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행)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 시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 인정 → (개정안)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현행) 3.0% → (개정안) 3.2%

-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li> <li>-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li> </ul>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지표금리</li> </ul>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①)
    - \* 자산·부채: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B-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A-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C-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A,B)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 발행주식과 B법인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

\*A법인과 B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동일함

구분	A법인	B법인
업종	광고업	광고업
세무상 장부가액	AA억	BB억
회계상 장부가액	AA억	CC억
유보 잔액		DD억*

- B법인 주식 평가 후 손상차손 DD억원을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DD억 유보로 계상

- 2022.x.xx.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합병목적	영업시너지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합병비율	A법인 : B법인 = 1:0 (무증자 합병)
합병비율 근거	합병신주발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무증자합병

- 신청법인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차변	대변
종속기업주식(A법인) CC억	종속기업주식(B법인) BB억 종속기업주식 손상차손 누계액(B법인) △DD억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에 1:0의 합병비율로 합병대가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이 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손금산입

<을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 제과-69, 2023.01.20)

(질의요지)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질의요지)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b>문의처</b>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b>발행인</b>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